C - 91 - 2015

책임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작업하여야 하며, 안전 관리부서장은 화기 작업장 인근에 폭발성·인화성·산화성·가연성 등 위험물질 의 운반·사용·저장 상태 및 기타 안전조치 요구사항 등이 적정한 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.

- (2) 폭발성·인화성·산화성·가연성 등 위험물질의 운반·사용·저장 장소 인근에는 화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고 흡연을 금지하여야 하며, 이에 대한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(3) 용접작업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으로 인하여 불꽃이 발생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화재감시인을 지정하고 작업하여야 하며, 화재감시인은 작업장 인근에 인화성 재료 등 위험물질의 존재유무, 불꽃의 비산방지조치, 인화성 액체의 증기 잔존유무 등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(4) 용접작업은 가능한 한 지상에서 작업을 하여 건물 내에서의 용접작업을 최소화하는 계획을 수립하고, 부득이 건물 내에서 용접작업을 하는 때에는 주변에 불꽃의 비산으로 인하여 화재발생 가능성이 있는 재료에는 불연재로 차단막을 설치하고 인근에 소화기를 배치하여야 한다.
- (5) 불티가 인접지역으로 비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장소에서 불티 비산 거리내의 벽, 바닥, 덕트의 개구부 또는 틈새는 불연성 재료로 빈틈없이 덮어야 한다.
- (6) 바람의 영향으로 용접 및 용단불티가 가연성 재료 부위로 비산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용접·용단작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.
- (7) 위험물질을 담았었던 용기에 용접·용단작업을 실시해서는 아니된다. 다만, 부득이 용접·용단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용기 내를 불활성가스로 대체하 거나 세정 조치 등으로 위험물질이 잔존하지 않도록 한 후에 실시할 수 있다.
- (8) 탱크내부 등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서 용접·용단작업시는 탱크내부의 산소 농도를 측정하여 산소농도가 18% 이상 23.5% 미만이 되도록 유지하거나,